

주·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위반 사실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· 폐문부재 ·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4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공고기간 : 2026. 8. 14. ~ 2026. 9. 11.
2. 공고대상 : 나*리 외 610건 (별첨 참조)
3. 공고방법 :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공고내용

가. 상기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방문 및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 소 :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(상계동) 노원구청 교통지도과

※ 서 면 : 우편, FAX, 인터넷(<https://cartax.seoul.go.kr>)

※ 기타사항 : 회신받을 전화번호, 주소, 인적사항 필히 기재

나.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%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(☎ 02-2116-4084, FAX 02-2116-46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